

울산지방법원 2021. 5. 21 선고 2021가단94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 등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4. 30.

판 결 선 고 2021. 5. 21.

주 문

1.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21. 3. 25. 위·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.
2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,
가. 4,923,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. 3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나. 2021. 2. 1.부터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는 날까지 월 275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1.에 대한 청구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3. 피고 2.에 대한 청구: 자백간주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 강경숙

별지